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6. 19 선고 2017가단6696, 2017가단836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

---

###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19나110672, 2019나110689(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6. 19 선고 2017가단6696, 2017가단8364 판결

### 전 문

원 고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김성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윤성

2. B

3. C

원고 2, 3의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세라

원고 2,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영달

피 고 D

변론 종결 2019. 4. 24.

판결 선고 2019. 6. 19.

##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9.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12. 16.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원고들에게 각 1,710,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의 다.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원고 A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3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2018. 9. 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C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5,3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2018. 9.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E는 2017. 1. 7.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그 외 F, G, H(총 7명)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원고들과 피고의 상속분은 각 1/7이다.

나.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2, 3, 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5, 6, 7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 공동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8. 3. 피고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지분인 6/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8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 공동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8. 3. 피고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마.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I조합 계좌에 10,262,196원의 예금잔액이 있었는데, 2017. 9. 22. 공동상속인인 G가 위 계좌를 해지하고 10,505,884원을 출금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돈을 균분하여 가졌다. 망인 사망 당시 상속채무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조합 화양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아래에 거시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돈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 또는 유증에 관하여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의 몫이라고 하면서 별지 목록 2, 3, 4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나머지 각 부동산은 망인을 사망할 때까지 모시는 사람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형제들이 약속한 것이어서 유언에 따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은 상속재산 중에서 피고의 몫으로 증여받았다고 피고가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주장하는 형제들 사이의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 (2) 2015. 4. 19. 증여받은 7,500만 원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 소유 토지 매매대금 중 7,500만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3년간 망인을 모시면서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장례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 J은행 업무지원센터장, K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58,190,960원은 특별수익이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① 망인은 치매, 뇌경색증,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2015. 5. 8.(피고가 2015.6.부터 거의 매달 L요양병원에 병원비를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인정함)부터 2016. 7. 4.까지 L요양병원에서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치매, 시각장애, 다발관절염 등으로 2016. 7. 13.부터 사망한 2017. 1. 7.까지 M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였다.

② 2015. 7. 25.과 2015. 9. 1. 망인 명의 계좌로 망인(시각 장애인) 소유 토지매매대금 71,292,567원이 입금되었다.

③ 피고는 2015. 4. 19.경 망인으로 모시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망인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2015. 4. 23. 망인 계좌에서 피고의 K은행 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고(당시 피고의 위 계좌 잔액 3,497원), 위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5. 5. 3. 망인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고(당시 잔액 54,000원), 2015. 8. 15. 100만 원이 입금되었고(당시 잔액 395원), 2015. 9. 9. 8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5. 10. 27. 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5. 12. 15. 300만 원이, 2016. 5. 25. 500만 원이, 2016. 9. 22. 5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K은행 계좌로 총 3,1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망인 명의의 J은행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2016. 1. 27. 1,100만 원, 2016. 5. 3.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6. 1. 27. 피고의 처인 N 계좌로 1,200만 원이 송금되었다(총 3,300만 원).

결국 망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또는 피고의 처) 명의 계좌로 총 6,400만 원이 입금되었다.

⑤ 피고가 자신 계좌에서 망인의 치료를 위한 병원비 등으로 총 5,309,040원(=2015. 5.경 394,170원+ 2015. 6. L요양병원 병원비 48만 원 + 2015. 7. L요양병원 병원비 623,300원 +

2015. 10. L요양병원 병원비 60만 원 + 2015. 11. L요양병원 병원비 60만 원 + 2016. 1. L요양병원 병원비 120만 원 + 2016. 7. M노인전문병원 병원비 325,000원 + 2016. 10. M노인전문병원 병원비 544,070원 + 2016. 11. M노인전문병원 병원비 542,500원)을 지급하였다(망인 명의의 위 J은행계좌에서 2015. 4. 19.부터 2017. 1. 1.까지 병원비로 약 470만 원이 지급되었다).

⑥ 망인 명의 위 J은행계좌에서 장례비로 총 250만 원이 지급되었다.

⑦ 피고와 피고의 처가 망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돈에서 병원비 지급액 외에 나머지 58,690,960원은 대부분 피고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관리한 망인 명의 위 J은행 계좌에서 2015. 4. 19. 이후로 피고의 생활비로 약 1,000만 원(이는 2015. 4. 23.경 계좌잔액에 이후 입금된 돈을 합하고 그 중 피고, 피고의 처, O,P에게 송금된 돈과 장례비, 병원비를 뺀 금액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⑧ 피고가 망인을 모신 기간의 대부분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생활한 점, 피고와 피고의 처가 망인이 입원한 기간에 망인의 시력장애, 불안장애, 치매 등으로 밤낮으로 수발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다만 2015. 4.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21개월 동안 피고와 피고의 처가 망인을 찾아보는 등의 수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이로 인한 비용을 약 1,05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위 1,050만 원은 망인 계좌에서 피고와 피고의 처 계좌로 송금된 돈 중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⑨ 따라서 58,190,960원(= 58,690,960원 + 1,000만 원 - 1,050만 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는 특별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 가. 유류분 반환 책임의 발생

앞에서 본 사실 및 판단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 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가 증여받은 재산액 + 유증받은 재산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다. 각 요소의 확정

(1) 적극적 상속재산: 계좌 잔액 10,262,196원

(2)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 및 예금액(특별수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망인 사망 당시 시가액 + 증여받은 예금액 58,190,960원

(3) 상속채무액: 0원

(4)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각 1/14

원고들의 법정상속분 각  $1/7 \times 1/2$

(5) 특별수익액

○ 원고들의 특별수익액: 0원

○ 피고의 특별수익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액과 58,190,960원

(6) 원고들의 순상속분액: 각 1,466,028원

$10,262,196원 \div 7 = 1,466,028원$

라. 유류분 부족액

(1) 원고들의 유류분액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의 망인 사망 당시 시가액 + 각 4,889,511원[=

$(58,190,960원 \times 1) + 10,262,196원 \times 1/14$ , 원 미만 버림]

(2) 유류분 부족액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의 망인 사망 당시 시가액과 각 3,423,483원(= 각 4,889,511원 - 0원 - 각 1,466,028원)이다.

#### 마.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 (1) 장례비용 지출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기한 상계항변

###### (가) 항변

피고는 망인의 장례비용 총 27,180,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장례비 중 원고들의 부담액에 해당하는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유류분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다.

######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10,242,700원(= 장례비용으로 인정된 금액 12,742,700원 - 망인 계좌에서 2017. 1. 9.

장례식장에 송금된 돈 25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와 위 장례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각 1,463,242원(= 10,242,700원 × 1/7, 원 미만 버림)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구상금채권과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19. 4. 23.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을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써 상계적상일인 2017. 1. 9. 무렵으로 소급하여 그 각 원금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2) 망인 예금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항변

###### (가) 항변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망인 예금 채권을 균분하여 가졌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이 사건 유류분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피고의 2019. 4. 23.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갑 제6호증의 1 하단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주장한 것으로 본다).

## (나) 판단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I조합 계좌에 10,262,196원의 예금 잔액이 있었는데, 2017. 9. 22. 공동상속인인 G가 위 계좌를 해지하고 10,505,884원을 출금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돈을 균분하여 가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위 출금액 중 피고의 지분액은 1,500,840원(= 10,505,884원÷7, 원 미만 버림)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250,140원(= 1,500,840÷6, 원 미만 버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채권과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19.4. 23.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을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써 상계적상일인 2017. 9. 22. 무렵으로 소급하여 그 각 원금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있다.

## 바. 유류분 반환의 범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즉 원물)의 이전(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19.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원고 B,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16.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채권액 각 3,423,483원에서 상계가 받아들여진 1,463,242원과 250,140원을 뺀 1,710,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원고들은 2017. 1. 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3. 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원고 A의 2018. 5. 2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과 원고 B, C의 2018. 5.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전일인 2018. 5. 29.까지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 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희길

1)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위 증여액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증여받은 시기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상속개시 시기는 2017. 1.이므로 증여액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